

## 생활관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 (명칭)** 본 생활관은 “성결대학교 생활관”(이하 “생활관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- 제2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, 규율과 질서있는 공동 생활을 통해 협동정신의 배양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인격도야와 아울러 영적 성장에도 모호하게 하기 위한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감독)**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지원처장(관장)이 통괄한다.
- 제4조 (이용 제한)**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. 다만 그 사용 목적이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5조 (관생 자치활동)** 관생 자치활동은 생활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.
- 제6조 (관생수칙)** 관생들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생수칙을 따로 정한다.

### 제 2 장 조 직

- 제7조 (직제)**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한다.
1. 관장(학생지원처장) 1명
  2. 직원 약간명(사감포함)

#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- 제8조 (운영위원회)**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제9조 (구성)**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지원처장, 사무처장, 사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고, 사감을 간사로 한다.(개정 2006.09.01)
- 제10조 (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.
1. 생활관 규정 및 수칙의 제정과 개정

## 생활관 규정(3-9-1)

2. 관생 납부금 책정
3. 예산 및 결산
4. 직원 채용 및 급여 승인에 관한 사항
5.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11조 (회의)**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초에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.

## 제 4 장 입관 및 퇴관

**제12조 (입관자격)** 생활관에 입관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,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. 다만 교포 및 교환 학생은 예외로 한다.

**제13조 (선발기준)** ① 입관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원거리거주자
  2. 학업성적 우수자
  3. 재관시 별점이 없는 자
- ② 신청자가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.

**제14조 (입관의 제한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할 수 없다.

1.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
3. 직전 학기에 입사비를 완납하지 못한 자
4.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자
5. 법정 전염병환자 및 단체생활에 적합치 못한 질병 보유자
6.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
7. 생활관장(사감)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15조 (관생선발)** ① 입관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입관원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접수된 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말에 본인에게 선발 결과를 통보한다.

**제16조 (입관등록)** 생활관에 입관 선발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관비를 납부하고 생활기록

### 생활관 규정(3-9-1)

카드, 서약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7조 (입관선서)** 입관생은 매 학기마다 입관 감사예배시 별표 1 서식(입관 서약서)을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06.09.01)

**제18조 (재관기간)** 재관 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19조 (퇴관)** 관생이 퇴관하고자 할 때에는 퇴관원을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20조 (퇴관처분)** 관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학기등록 미필자
2. 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
3. 생활관 납부금을 미납한 자
4. 관장(사감)에게 3회 이상 경고당한 자
5.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 받은 자
6. 별점이 100점에 달한 자

### 제 5 장 생 활 규 칙

**제21조 (생활규칙)** 관생의 공동생활의 규율과 질서 유지를 위해 별표 2와 같은 생활규칙을 두며, 이를 위반할 때에는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.

**제22조 (식사)** ① 식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식당에서만 할 수 있다. 다만 환자에 한하여는 별도 조치할 수 있다.

② 식사시간 외에는 일체 배식을 하지 않으며,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사전에 관장(사감)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③ 식당의 집기 및 식기를 식당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지 못한다.

④ 식당 출입시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.

**제23조 (외출 및 외박)** ① 평일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으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장(사감)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휴일의 외출, 외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(사감)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, 외출, 외박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.

③ 외출, 외박한 관생은 정해진 시간까지 귀관하여야 하며, 밤 11시까지 귀관치 않을 경우에는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.

④ 외출, 외박자는 귀관 후 반드시 수위실에서 확인을 받은 후 관장(사감)에게 귀관보

## 생활관 규정(3-9-1)

고를 하여야 한다.

**제24조 (면회)** ① 관생의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하며, 관장(사감)의 허락없이 호실에서 타인을 접견하거나 숙식할 수 없다. 다만,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관장(사감)의 허락을 받아 호실에 출입할 수 있다.

② 면회시간은 평일(월-금)에는 09:00부터 19:00까지로 하고, 휴일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③ 면회 신청자는 면회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.

**제25조 (삭제)**

**제26조 (점호)** 관생의 점호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
1. 일조·일석점호: 매일 06:30, 23:00 (주일은 제외)
2. 환경점호: 매주 화요일 22:00

## 제 6 장 재 정

**제27조 (회계)** ① 생활관의 회계는 교비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**제28조 (납부금)** ① 관생은 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관비의 금액과 납부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③ 일단 납부된 납부금은 퇴관시에도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 휴학, 자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별정산 한다.

**제29조 (납부금의 용도)** 관비는 관생이 직접 이용하는 주식비, 광열비, 난방비, 소모품비, 비품비, 위생비에 충당한다.(개정 2006.09.01)

**제30조 (예산 및 결산)** ① 관장은 학사일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처로 예산을 신청한다.

② 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## 제 7 장 관 생 자 치 회

**제31조 (관생자치회)** 생활관의 관내 생활에 관한 관생 자치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둔다.

**제32조 (직무와 임무)** ① 관생자치회의 임원은 회장 1명, 총무 1명, 총장 약간명을 두되

## 생활관 규정(3-9-1)

---

관장이 임명한다.

② 임원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은 최고 학년으로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, 자치회의 운영과 회무를 관장하고 질서유지 및 규칙이행을 지도한다.
2. 총무는 회장의 바로 아래 학년에서 임명하며,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층장은 각 층을 대표하고,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한다.

**제33조 (규정개정)**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34조 (기타)**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중전의 생활관정관은 폐지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, 제7조)은 199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7조, 제9조, 제17조, 제26조, 제29조)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7조, 제9조, 제13조, 제18조~제20조, 제21조 별표2, 제25조~제28조, 제30조, 제32조)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9조, 제21조, 별표 2)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생활관 규정(3-9-1)**

별표 1 (개정 2006.09.01)

<p><b>입관서약서</b></p> <p>나는 성결대학교 생활관에 입관함에 있어 관생수칙과 관생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, 항상 솔선수범과 질서유지에 힘쓰고 우리 대학의 설립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생활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.</p>
--

별표 2

**별 점 내 용 및 배 점**

별 점 내 용	배 점
○ 음주, 흡연행위	100 점
○ 무단외박	50 점
○ 무단 외인 동석(호실 내)	50 점
○ 물품 사취 행위	50 점
○ 사내 무단 외인 접견 및 담화	30 점
○ 관생 구타 행위	30 점
○ 각종 예배 불참	20 점
○ 23시 이후 외출 (단, 임원 허락시는 제외)	20 점
○ 공공기물 파손행위(고의적)	20 점
○ 기타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거나 공적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관장(사감)이 그 상황에 따라 별점 부과	
* 별점이 100점이 되었을 때에는 동 규정 제20조 6호를 적용하여 퇴관 조치한다.	